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7월 4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벤처·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M&A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 간 인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(안 제9조)
- 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
- 나. 「상법」의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제4호)
-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규정이 제370조에서 제344조의3으로

변경

- 다. 「개인정보보호 보호법」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벌칙의 근거 마련(안 제10조제3항)
-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함

### 3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정책총괄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행정정보-행정·입법예고”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 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
(전화 : 042-481-4541, Fax : 042-472-7929)

**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**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370조”를 “제344조의3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인수하여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**부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주식등”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(「상법」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총수,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. 5.·6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제344조의3</u> ----- ----- -----. 5.·6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유예 제외)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단서 신설>	제9조(유예 제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인수하여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확인 요령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(확인 요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